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13

발의연월일: 2020. 11. 5.

발 의 자 : 양금희 · 이종성 · 김영식

황보승희 · 윤두현 · 한무경

전주혜 · 김정재 · 김기현

윤주경ㆍ이 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미국, 캐나도, 호주 등의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출국금지의 효과를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게됨.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 2의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 령을 받고도 1천만원 이상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 나.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금전 지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	제4조(출국의 금지) ①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가사소송법」 제68조제
	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1천만원
	이상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양
	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제4항에 따른 양육비 일
	<u>시금</u>
	나.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금전 지급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5 <u>제1호·제2호·제2호의</u>
<u>지의</u>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u>2·제3호 및 제4호의</u>
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